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  
보)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  
직유관단체로 중소기업청 소속  
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  
직유관단체”이라 한다)은 행동  
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직유관단체의 행동  
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  
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  
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  
7년 10월 20일까지로 한다.

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 (생략)

②·③ (생략)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

-----  
-----  
----- 기관·단체의 경우

5. (현행과 같음)

6.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9. (현행 제6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  
-----  
-----  
----- 국민권익위원회-----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u>중소기업청(지방청, 국립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중소기업청”이라 한다)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p>	<p>제1조(목적) ----- ----- ----- ----- <u>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u> ----- ----- ----- ----- -----,</p> <p>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로 중소기업청 소속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직유관단체”이라 한다)은 행동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20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령)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함께 중소기업청 훈령 제313호는 폐지한다.

## 중소기업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중소기업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청(지방청, 국립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중소기업청”이라 한다)공무원(이하”를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기관·단체”를 “기관·단체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하였던 경우
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9조제1항 중 “국가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청장(감사담당관 참조)에게 보고
- 2) 중소기업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1. 개정(제정)이유

연고관계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5호, 2014.6.30.)을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제8호 신설)

- 1)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경우
- 2)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나. 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제8호 신설)

-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로 중소기업청 소속의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직유관단체”이라 한다)은 행동강령을 제정·